

【규 칙】

- 제569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제570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38
- 제571호...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40
- 제572호...서울특별시종로구보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2
- 제5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45

【공 고】

- 제2010-143호...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83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함.
(제2조)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2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현금 납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추가(제1조)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2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장 제1절(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4절(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5절(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주민세 재산분

제3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6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7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면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세율)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제39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2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9조(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후자시설·관광휴게시설(그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한다.
2. 토지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이 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주택 외의 건축물 :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한다.

제10조(문화지구의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문화지구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임대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

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1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정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5장 보 칙

제2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으려면「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제4조)
- 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제19조)
-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2조)
- 라.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제5조)
- 마. 지방세법 이관(2010.1.1) 예정인 감면 폐지
- 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폐지
- 사. 지방세법 §112②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
- 아. 적용시한 연장 : 2009.12.31 → 2010.12.31(부칙 제2조)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의원 2명”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 제정·운영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2조(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설치”를 “구성”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4급 이상 소속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규제개혁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팜프렛”을 “팸플릿”으로, “총채”를 “총체”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팜프렛”을 “팸플릿”으로 한다.

제6조 중 “종로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광고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문화공보과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 이상 소속공무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4. 노인복지 관계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여성정책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3조 제목 중 “위촉”을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설치”를 “구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설치 운영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해당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9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해당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나. 그 밖에 위원의 임기규정, 회의 개최시기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2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포상)”을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패·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에 초청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9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3년 구성 이후 실효성이 없어 개최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정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제12조제2항)

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 (제14조제2항·제3항)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82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3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4호 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10조의2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및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업자	⑪ 상 호		⑫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 반 입 량	kg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 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 다. ③, ④, ⑤ :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차. ⑭, □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 카. ⑮, □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 타. □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일련 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비 고
	반 입 일 자	배출자	배 출 장 소	수집운반 업소명	수집운반 차량번호	폐기물 종 류	반 입 량(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호	운 반 일 자	처 리 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 종	운반인계량(kg)				
							당일(kg)	누계(kg)							당일(kg)	누계(kg)			

- 〈 작성요령 〉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 고
	성 명 (상 호)	배 출 장 소	폐기물 종 류	발생량 (kg)	운 반 일 자	업 소 명	차 량 번 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업 소 확 인	처 리 일 자	처 리 방 법	처리량 (kg)	처리업자 확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규정 신설(제2조제5호)
-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의2)
- 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의3)
-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의4)

규 칙**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56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판매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구금고에 불
입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과 관련하여 수입증지판매대금 및 계기사 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구금 고에 불입하도록 함(제5조)

나. 관련서식 개정

규 칙**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570호**

서울특별시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정 당시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바 구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

규 칙**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571호**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의 “당해연도 평가”를 “업무평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4급 이상 소속공무원 및 평가업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9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해당 위원회 관련 규칙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나. 그 밖에 위원의 임기규정, 회의 개최시기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

규 칙**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572호**

서울특별시종로구보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종로구보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종로구보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보 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란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8. 회보란

제3조(구의회)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

폐회·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4조(휘보란) 제2조제8호에 따른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방침으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구보의 발행 등)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배포 및 비치) ①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구보의 보관) 주관부서에서는 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 구보발행은 인쇄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으나 구보 인쇄본을 열람하기 보다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보를 인쇄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구보 파일을 게시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보를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날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구보 발간일을 명확히 함(제6조)
- 나.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함(제7조 제1항)
- 다. 일반인들이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장비 설치 또는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제7조제2항)

규 칙**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57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3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6 및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 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영 제29조제6호”를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별표 6을 각각 별표 6 및 별표 6의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의 8급·기능직 8급 란과 9급·기능직9급 이하 란의 경력기준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약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능 명장(6년)	기사(2년), 산업 기사(4년), 기능 명장(2년)	기사, 산업기사 (2년), 기능사(4 년),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 사(2년), 국제기 능올림픽 입상 자, 전국기능대 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 능대회 입상자	기능사, 지방기 능경기 입상자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 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장려법」에 따른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의2]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 속 기 능 장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기 사 :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임업종묘,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기 능 장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기 사 :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능 장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기 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 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산업기사 :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 기 사 : 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 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 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 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 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통 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산업기사 :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 (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 (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 (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족인공수장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비고 : 별표 6의 「비고」는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전 기				
기 계	기 계	기 계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운 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선박항해	선박항해	선박항해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조 리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사무보조	위 드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 1. 별표 6 「비고」는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판, 배관)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판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각축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판,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판,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 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수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사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환경수질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 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렬	직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 상담	전화 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 이하
직렬	직류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외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 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 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 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 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역		
조리	조리		
사무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 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 기 3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계리	주산1급, 부기1급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 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 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8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6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 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8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의3관련)

가. 6급 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 무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물류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 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개비율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원자로조종 사, 핵연료물질취 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 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 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 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 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 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 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정 사

공 업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학,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 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식 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 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 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 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 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 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정 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 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 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어로, 수질 환경, 어병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 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장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통 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학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학,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식충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가 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 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 성동위원소취급 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평 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	생 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청소년 지도사1급, 평 생교 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을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 능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디자인 직렬(직류) 신설 등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험생의 편의제고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규정 신설 (제9조의2)
- 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 (제16조의3)
- 다. 기능대회 입상자(기능 명장 등) 특별채용 요건 신설 (별표 6)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0-143호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주민과 관계전문가께서는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가.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03월24일(수) 15:00

나. 장 소 : 종로구 구민회관 대강당(창신동 222-8번지 2층)

3.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개요

가. 지구명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나.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1·2·3동 및 송인1동 일대

다. 면 적 : 846,100㎡(2단계구간 738,152㎡)

라.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 2개 구역(34,918㎡)

- 주택재개발사업 : 6개 구역(483,021㎡)

마. 공청회 내용

- 인구 및 주택 수용 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계획 등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10년03월16일까지 의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사안별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접수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또는 팩스(02-731-0646)신청
- 신청양식 :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향 게재